

가입비등 ☐ 지급 요청서 ☐ 반환 요청서

※ ☐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모집주체	조합명		
	대표자	전화번호	
	조합 주소		
요청내용	요청사항	☐ 지급	☐ 반환
	요청사유	☐ 예치한 날부터 30일 경과	☐ 청약철회 의사표시
예치금액	₩ (금 원)		
예치번호 /예치일			
입금계좌	☐ 모집주체(신탁업자) ☐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		

「주택법 시행령」 제24조의7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4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의 지급 또는 반환을 요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예치기관의 장
(지점장) 귀하

첨부서류	1. 가입비등 지급 요청인 경우: 「주택법」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신탁업자의 업무대행계약서 사본 2. 가입비등 반환 요청인 경우: 청약 철회 요청서 사본
------	--

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

- 예치기관의 장은 모집주체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동의를 받아 가입비등의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모집주체의 업무대행자인 신탁업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.
- 예치기관의 장은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가 모집주체의 동의를 받아 가입비등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요청일부터 10일 이내에 가입비등을 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에게 반환해야 합니다.